

2021년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한국어 강사 모집 공고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한국어 학당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담당할 강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 1. 18 .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

I 모집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강의료
강의초빙교수	00명	2021.3 ~ 2022.2 (1년)	▶ 한국어 학점과정	93,500원/시간
한국어 강사	00명	2021.3 ~ 2021.8 (6개월)	▶ 한국어 연수과정	35,000원/시간 (급장 40,000원/시간)

* 채용분야

- 1) 강의초빙교수 : 최종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본교 교무과 강의초빙교수로 위촉 추천, 최종 위촉 시 교무처와의 계약에 의해 전북대 강의료 지급 기준에 의거 학점과정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
- 2) 한국어 강사 : 본교 언어교육부 시간강사로 위촉 추천, 최종 위촉시 언어교육부와의 계약에 의해 언어교육부 한국어 학당 강의료 지급 기준에 의거 연수 과정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

** 담당업무

- 1) 한국어 학점과정 : 1년 최소 주당 9시간, 학기별 주당 최대 9시간 이하
 - 2) 한국어 연수과정 : 주당 10시간(1일 2시간)
- (단, 2021학년도 담당예정과목은 교과과정 변경, 수강신청 인원에 따른 분반 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II 지원자격

1. 공통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 가.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국어학, 국문학) 석사과정 수료자 이상 또는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 수료자 이상 (2021. 2 졸업예정자 포함)

나. 한국어 교원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2. 강의초빙교수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연구실적연수와 교육 경력연수의 합계가 4년 이상인 자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자(별표 1 참고)로서 언어교육부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병역을 마쳤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면제받은 자

라. 195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만 65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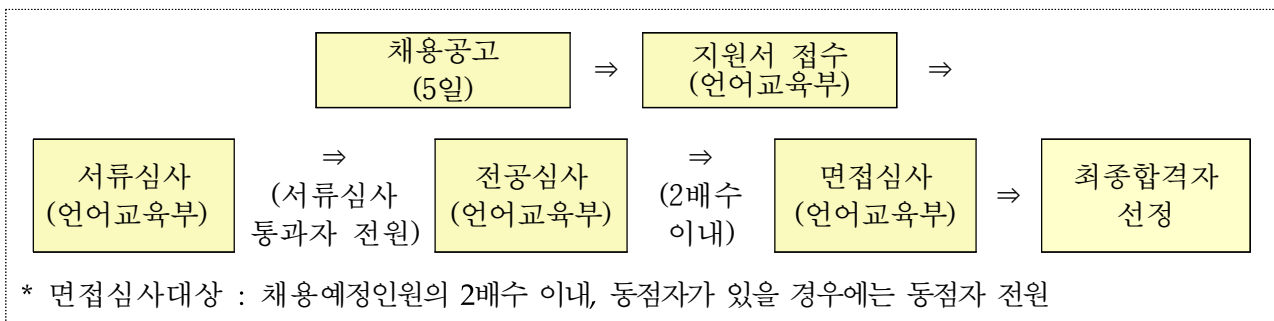
마. 본교 이외의 타 대학 또는 기관에 전임으로 소속되어 직장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본교 강의초빙교수에 지원할 수 없음

III 채용 일정

1. 채용 일정

공고기간	응시원서 접수	전공심사 합격자발표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21.01.18(월) ~ 01.22(금) 홈페이지 게재	‘21.01.18(월) ~ 01.22(금) 18시	‘21.01.27(수) 개별통보	‘21.01.28(목) (예정)	‘21.02.18(목) (예정)

2. 채용절차(흐름도)



※ 전형 일정은 세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V 지원서류 접수

1. 제출서류 (※ 본 순서대로 정리하여 서류 제출)

- 가. 지원서 및 수업 계획서 [서식 1], [서식 2]
- 나. 최종 학위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다.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 라. 한국어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마. 기타 능력 입증 서류
-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2. 접수방법

- 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021. 1. 2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고, 서류미비 및 접수확인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우체국 및 택배사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나. 접수처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1층 언어교육부 행정실 (☎ 063-270-2455)
- 다. 접수시간 :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함 (토, 공휴일은 제외)

3. 유의사항

- 가. 지원서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언어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함

- 바. 본교 비전임교원(강사, 겸·초빙교원 등)에 재직중인 사람도 신규 채용에 지원할 수 있으나, 신규채용에 합격하는 경우 기 임용된 직급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전북대학교 강사와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V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1. 전형방법

가. 1차 기초심사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적합여부 심사

나. 2차 전공심사 100점

- 지원자의 교육철학, 교육경력, 수업환경 및 학생관리, 교수법,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심사로 1차 기초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결정

다. 3차 면접심사 10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으로 2차 전공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

2. 합격자 결정

가. 강의초빙교수, 강사는 필요인원만큼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아닌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전공심사 전형성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 면접심사 실시

다. 면접심사 전형성적 동점자 발생 시 심사 점수 중 인격 및 소양→교육철학 및 교수법→한국어 교육지식→면접태도 및 표현력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 함.

라. 합격자의 계약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로 충원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심사 기준은 본 학당 내부지침에 따름

별표 1] 자격기준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환산율 산출기준

-본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준 준용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p>[2]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간강사는 주당 5시간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 ② 비전임교원은 상근인 경우는 100%, 비상근인 경우는 시간강사 경력에 준해서 인정함 	60%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70%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3]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법학실무교원으로 지원한 자가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6.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8.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9.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1.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3.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5.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70%